## 착공연기확인서

허가(신고)번호		허가(신고)일자
건축주		
대지위치		
연기 전 예정일자		
연기 후 예정일자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장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